

2019

사육곰 현장조사 및 시민인식조사 보고서



**PROJECT
MOON BEAR**

사육곰 현장조사 및 시민인식조사 보고서

■ 요약

I. 서론

1. 조사 목적	3
2. 조사 배경	3
3. 관련 법 규정	9

II. 사육곰 현장조사

1. 조사 개요	17
2. 조사 방법 및 내용	17
3. 조사 결과	22
4. 고찰	31

III. 사육곰 관련 시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35
2. 조사 방법 및 내용	35
3. 조사 결과	36
4. 고찰	40

IV. 야생동물 이용 산업 해결 외국 사례

1. 외국사례	41
2. 시사점	43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45
2. 제언 : 한국의 곰 생츠퍼리 설립 및 운영	46

0 요약

한국에서는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농장에서 길러 웅담을 채취하는 것이 아직 합법이다. 야생에서 거의 멸종하여 정부가 종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같은 종을 적절한 규제 없이 기르고 있다. 농장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은 경제적 가치 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복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기르는 기형적인 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맺는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사육곰 문제의 해결은 좁게는 철창 안의 사육곰들을 고통의 대물림에서 해방시켜 동물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넓게는 우리사회에서 왜곡된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의 관계를 바로잡는 단초가 될 것이다.

동물자유연대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사육곰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육곰들의 삶은 방치와 학대의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사육공간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으며, 도축 기준이 되는 '10년'이란 연령기준 또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되었고, 도살에 대한 지침도 없어 마취제 없이 근육이완제만을 주입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농장주 역시 곰 사육의 늪에 갇히기는 매한가지다. 대부분의 농장주는 출구전략이 없어 경제성을 상실한 곰 사육을 억지로 이어가고 있다. 설문에 응한 농장주 28명 중 24명은 정부에서 곰을 매입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매입 반대는 2명, 무응답 2명). 경제성을 잃은 곰 사육 과정에서 이를 대신 채운 것은 비용 절감과 이로 인한 동물복지의 위협이다.

우리 시민들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생츄어리 이주운동에 85.6%가 찬성했으며 (총응답자 1,500명), 79.3%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78.3%가 동의했다.

결국 농장주도, 시민도, 동물단체들도 사육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고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사회적 합의'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작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외쳐왔던 정부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동물자유연대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육곰의 복지 제고를 위한 생츄어리 건립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서론

1. 조사 목적

현재 국내 웅담채취 목적의 사육곰 산업은 그 목적과 사육과정 모두 비인도적이며, 산업적으로도 경제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사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 때 1,400마리에 이르렀던 사육곰은 증식금지 사업을 거쳐 이제 479마리(2019년 6월 현재)만 남았다. 남아 있는 개체의 경우 증식이 불가하므로 이들이 도살되거나, 자연사하게 되면 종래에는 국내 사육곰 산업은 종식된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적 경제성을 잃은 사육곰들이 농장주들의 방치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육곰은 가축도 야생동물도 아닌 채로 동물학대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으나, 그 복지 실태는 제대로 확인된 바도 없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전무하다. 정부는 2014년 증식금지 사업 결정 당시 사육곰 문제해결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사육곰 보호시설 등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에 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산업의 종식 및 완전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현장조사를 통해 사육곰이 처한 현실과 복지상태를 점검, 평가하고 사육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향후 생츄어리 수용에 적합한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사육곰 실태조사와 함께 농장주 인터뷰를 통해 사육곰 산업 종식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수립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인식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사육곰 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와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였다.

동물자유연대와 곰보금자리는 현장조사 결과 및 시민인식조사를 통해 사육곰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의 해당 산업 종식 및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 배경

A. 국내 사육곰 산업 경과

(1) 재수출 목적 곰 사육 장려와 정책의 실패

국내 사육곰 문제는 1981년 5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육시설을 갖춘 자'에게 '사양 증식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을 허용(산림청,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준칙)하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곰 사육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했으며 4년 동안 말레이시아, 일본 등으로부터 493마리의 곰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멸종 위기종 보호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높아져 1985년 7월 곰 수입이 금지된 데 이어 1993년 7월 한국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 수출길 또한 막히게 되었다. 곰의 수입, 수출의 금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육곰 산업 정책은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CITES 가입 이전에도 외국 판로가 막혀 사육곰이 재수출된 실적은 전무하다. 곰 제품 수요가 있는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수출'은 사실상 허위 광고였다.

(2) 사육곰 처리기준 마련 및 완화와 소관부서 변경

사육곰의 수입과 수출이 금지된 후, 정부는 사육곰 농가의 손실 보전을 명목으로 1999년 2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조수의 수입·반입용도의 변경)에 24년 이상 노화된 곰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24년 이상 연령의 곰을 도살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야생 조수의 인공사육허가 규정(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을 삭제해 인공사육허가, 감독상 명령, 인공사육 실적보고, 사육시설 이전신고 등의 관리규정이 사라짐으로써 사육곰에 대한 관리부실을 초래했다. 이후 2005년 사육곰 관리지침을 만들어 사육곰 용도변경 승인, 양도·폐사 신고, 신고자의 보고사항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기까지 무분별한 증식과 탈출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사육곰 관리지침을 신설하면서 농가를 달래기 위해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개체의 경우, 10년 이상 된 곰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 기간 사육곰에 대한 관리업무는 산림청에서 환경부, 지자체를 거쳐 다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며 표류했다. 산림청의 야생 조수 관리업무는 1999년 5월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2005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육곰 관리업무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정부의 사육곰 관리는 이미 상당수 곰들이 음성적으로 쓸개즙 또는 고기용 등으로 거래되는 가운데 뒤늦게 규정을 마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마련된 규정은 부실해 2005년에 만들어진 사육곰 관리지침만 하더라도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사육곰의 밀도살 및 쓸개즙의 불법 채취 등 꾸준히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수요가 고위공무원인 경우가 많아 적발 시에도 기소유예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사육곰 특별법 발의

곰 사육 정책 폐지하고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 사육곰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2010년 홍희덕 의원이 사육곰 증식 금지 조치, 국가 주도 사육곰 전량 매입, 매입한 곰의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환경부는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실상 입법을 반대하였고,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3년 사육곰 관련 2개의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육곰의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최봉홍 의원 대표 발의한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이 두 법안은 사육곰 정책 폐지를 목표로 사육곰의 증식 금지 조치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나, 장하나 의원안이 국가의 사육곰 매입 의무를 담는데 반해, 최봉홍 의원안은 보호가치가 있는 사육곰에 한해 선별 매입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3년만에 사육곰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시민 사회의 기대를 모았으나, 하지만 두 건의 발의안 모두 이해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4) 사육곰 실태조사 및 증식금지

시민단체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사육곰 산업 정책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까지 발의되자 환경부는 그제서야 사육곰 실태 및 현황파악에 나섰다.

2012년 4월 충남대 연구 용역을 통해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1차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이 연구에는 녹색연합과 동물자유연대 등 민간단체, 학계, 사육곰 농가, 야생동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총 53개 농가에 998마리의 사육곰이 확인되었고, A. 증식금지 후 개체감소 유도 B. 증식금지 후 단계별 매입 C. 전량 매입 D. 학술기증 및 곰 공원화 지원 E. 농가의견안 (증식금지 전제 증식금지 보상비 일괄지급) F. 곰보호소 설치 등 6개의 관리방안이 도출되었다.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리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영리목적의 사육곰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가치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적극적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뒤로 한 채 증식금지 사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92마리를 제외하고 967마리 사육곰에 대한 중성화가 진행되었다. 사육곰 증식금지 결정 당시, 환경부는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와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원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농가, 관계부처, 국회,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

로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사실상 증식금지 이후 환경부는 뚜렷한 관리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 몰수동물보호시설과 전·폐업 지원 추진

환경부는 증식금지 사업 당시 보상금 지급이 끝났으며,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육곰 문제 완전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사육곰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사업은 일부 개체에 대한 몰수동물 보호시설 마련과 사육농가에 대한 전·폐업 지원사업이다.

몰수동물 보호시설은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곰들을 불법증식한 경우, 이 불법증식된 개체들을 몰수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사육곰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나 정부가 보호시설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현재 환경부가 고려 중인 마리당 300만원 수준의 6억원 규모의 전·폐업 지원금도 산업 종식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당국의 문턱에 막혀 2020년 정부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사육곰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산술적으로 2015년에 태어난 마지막 개체를 합법적 도살 연한인 2024년에 도살하면 우리나라의 사육곰 산업이 종식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응답에 대한 수요 감소로 2019년 3월 기준 도살 가능 연한인 10세 이상의 곰들이 83%로 적극적 종식 노력이 없다면 정부의 계산대로 2024년에 사육곰 산업은 종식될 수 없다.

B. 사육곰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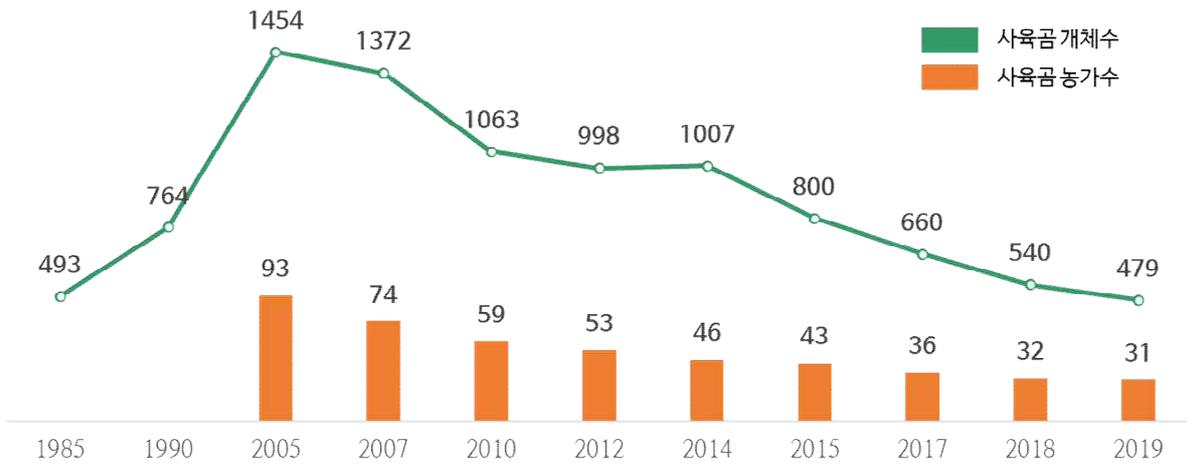
2019년 6월 현재 전국 31개 농장에 남아있는 사육곰은 479마리로 이들은 동물학대와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 사육곰 개체수 및 농가 현황

사육곰은 1981년에서 1985년까지 수입된 493마리를 시작으로 증식을 통해 2005년 최대 1,454마리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증식금지 사업 이후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6월 기준 현재 479마리가 남아있다. 이는 연초 526마리보다 47마리가 감소한 숫자이다.

사육곰 농가 수 또한 개체수가 최대로 증가한 2005년 93개 농가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31개 농가만 남아있다.

[그림 1] 사육곰 농가 및 개체수 현황



[표 1] 연령별 사육곰 분포 현황

구분	5세 이하	6~10세	10세 이상	합계
19. 6월 기준	42	51	386	478
(%)	8.8%	10.6%	80.6%	

(2) 사육곰 산업의 문제점

a. 동물복지의 저해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동물들은 삶의 질과 직결된 지낼 사육공간도, 먹이도, 이동과 움직임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오직 그들을 관리하는 인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육곰의 경우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보니 전적으로 농장주의 의지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사육곰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어 오라이며, 농가에서 곰 사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 역시 크지 않다. 많은 농장에서 관리의 수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좁은 뜰장에 곰들을 밀어 넣거나 제대로 된 먹이와 식수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급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먹이를 찾아 이동하거나 섭취하는 반달가슴곰에게 좁은 철창 생활은 그 자체로 학대이며, 아무 할 일도 없는 무료함이 반복되며 정형행동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 개체도 다수다. 또 독립생활을 하는 반달가슴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경우 심심치 않게 싸움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어도 치료조차 받지 못 하고 있다.

열악한 사육환경 뿐 아니라 직접적인 학대행위도 사육곰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강원도 흥천에서 사육곰에게 가혹 행위를 하며 쓸개즙을 불법 채취 한 사실이 밝혀졌다.

살아있는 곰의 배를 가르고 쓸개에 금속재질의 깔대기를 고정시킨 후 고무관을 연결해 필요 시 마다 쓸개즙을 채취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음성적 쓸개즙 채취는 근절되지 않고 그 방식은 더욱 진화하여 2010년 초음파 기계를 활용해 쓸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낸 후 주사기로 채취하는 장면이 한 방송사의 취재에 의해 포착된 바 있다.

문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세 이하의 어린 개체의 경우 길게는 30년 이상을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b. 부실한 관리·감독 및 관련법의 부재

사육곰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사육에 관련된 환경이나 준수사항 등 관련법의 부재와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육곰 관리지침 및 야생생물법의 보고 및 검사 조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는 연 2회 사육시설 및 사육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함에도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개체의 불법 증식, 탈출 사고 등 관리 부실에 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의 한 사육곰 농가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32마리의 개체를 불법증식해왔음에도 시민단체가 이를 확인하고 이슈화하기까지 정부는 이를 방치하였다. 또한 불법증식이 적발되어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뿐 몰수 개체를 보호할 시설이 없기에 해당 농가는 여전히 불법 증식 개체를 그대로 사육하고 있다. 관리지침은 서류에만 존재할 뿐, 지방 환경청의 현장 지도점검은 개체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농가의 서명을 받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겨울잠을 자는 곰의 특성상, 내실에 들어가 있는 경우 곰의 개체수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는 환경부와 환경청의 관리감독 부실 탓도 있으나, 관련 법률과 지침의 실효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가축의 경우 최소한의 사육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동물보호법으로 학대를 방지하고 있다. 축산법은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적정사육면적으로 정해놓았다. 아직 미비하지만, 운송과 도축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동물복지 권고안이 존재한다. 도축장에서는 동물이 의식을 소실한 후 도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사육곰은 농가의 수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길러지지만 동물복지 기준이 없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이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사육곰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별도로 제시해놓은 <사육곰 관리 지침>(2005)에는 최소 면적, 철창의 재질 등 몇 가지 사육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동물복지도 안내하지 못할 뿐더러 강제조항도 아니다. 사육곰의 고통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인 도살과정 역시 어떠한 기준이나 권고안도 없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육곰들은 죽는 절명하는 순간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예상된다. 수익을 위해 길러지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규마저 없는 상황에서 동물복지가 무시되고, 동물학대가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c. 사람에 대한 안전 위협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데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시설, 많은 운영 자본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인명사고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동물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 역시 인간의 야생동물의 서식지 침탈과 야생동물 무역 증가, 접촉 기회 증가 등으로 공중보건학적 위험성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국가에서는 야생동물을 개인이 임의로 기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물원의 허가 조건도 점점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사육곰 농장에서의 곰 탈출 사고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잦은 탈출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곰을 보유한 농장에서는 몇 마리의 곰을 보유하고 있는지 농장주도 모른 채 몇 달이 지나기도 한다. 최근 한 사육곰 농장에서 사육곰 관리기록의 개체수보다 3마리나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 한 마리의 행방은 묘연하다. 행방의 파악은 고사하고 당국은 탈출 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곰 생츠퍼리에서는 구조한 반달가슴곰에서 결핵, 구제역, 조류독감 등 다양한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을 확인한 바 있다. 민간 단체와 베트남 정부의 역학 조사에서는 사람에게서 전염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도 결핵으로 구조한 곰들이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곰의 결핵 감염은 사망 직전까지 무증상에 가까워서 감염개체를 발견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어렵다. 곰은 여러 가지 인수공통전염병을 사람과 공유하는 동물이다. 한국에서 사육곰과 사육곰 농장주의 질병에 대해 어떠한 조사나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위험성이 있다.

3. 관련 법규정

사육곰 산업은 정부 권장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작된 산업으로 현재 또한 사육곰의 사육 및 도살, 응담 채취는 합법이다. 하지만 사육곰 산업으로 인해 한 법률 안에 멸종 위기종의 보호와 멸종 위기종을 대상으로 한 사육과 도살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고, 그 사육과 도살, 개인 간 판매의 전 과정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응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 및 도살 모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야생생물법)에 근거한다.

사육곰의 도살과 응담의 약재 이용은 다음과 같은 야생생물법과 그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다.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입 목적 외 용도 사용은 불가하나, 사육곰의 경우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 기존 재수출 목적에서 가공품 재료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환경부의 재량에 따라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1) 법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 3항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 ○ 시행규칙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제1항 제4호

: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신청 가능

↳ ○ 시행규칙 별표 5 곰의 처리기준(제22조 제1항 제4호 관련)

종류	처리기준(나이)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	증식된 곰
큰곰	25년 이상	
반달가슴곰	24년 이상	
늘보곰	40년 이상	10년 이상
말레이곰	24년 이상	
아메리카흑곰	26년 이상	

용도변경에 있어 처리기준은 사육곰의 나이, 10년 이상된 개체라는 단 한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처리기준은 그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기존 24년의 기준과 하향된 10년의 기준 모두 곰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정한 시간이다. 곰의 수입이 그러했듯, 곰의 처리 또한 정부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곰의 용도변경 및 처리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보호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역설적이다. 국가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반달가슴곰이 명시되어 있다.

(2)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2016-241호)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곰과 Ursidae	자이언트팬더(<i>Ailuropoda melanoleuca</i>)	곰과 전종 <i>Ursidae</i> spp((부속서I에 해당하는 종 제외)
	말레이곰(<i>Helarctos malayanus</i>)	
	느림보곰(<i>Melursus ursinus</i>)	
	안경곰(<i>Tremarctos ornatus</i>)	
	큰(불)곰 <i>Ursus arctos</i> (부탄, 중국, 멕시코, 몽고 개체군만 해당)	
	히말라야큰(불)곰(<i>Ursus arctos isabellinus</i>)	
	반달가슴곰(<i>Ursus thibetanus</i>)	

다음과 같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반달가슴곰 (학명: *Ursus thibetanus*)을 종(species) 수준에서 명시한다. 하지만 국내 멸종위기종 지정에서는 반달가슴곰으로 우수리 아종(학명: *Ursus thibetanus ussuricus*)만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여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4)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시행규칙 별표 1)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번호	종 명
1	늑대 <i>Canis lupus coreanus</i>
2	대륙사슴 <i>Cervus nippon hortulorum</i>
3	반달가슴곰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4	붉은박쥐 <i>Myotis rufoniger</i>
5	사향노루 <i>Moschus moschiferus</i>
6	산양 <i>Naemorhedus caudatus</i>
7	수달 <i>Lutra lutra</i>
8	스라소니 <i>Lynx lynx</i>
9	여우 <i>Vulpes vulpes peculiosa</i>
10	작은관코박쥐 <i>Murina ussuriensis</i>
11	표범 <i>Panthera pardus orientalis</i>
12	호랑이 <i>Panthera tigris altaica</i>

최근 논란이 된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사육곰의 불법증식도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이다. 법에 따라 인공증식허가를 받고 증식이 이루어져야 하나, 4년 간 허가 없이 32마리의 개체가 불법 증식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조항의 유명무실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5) 법 제16조 제7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시행령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1의2에서 정한 것으로 반달가슴곰은 이에 해당

B. 동물보호법

사육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이다. 살아있는 사육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는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6조(벌칙) 제2항 제1호

: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생물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그 도살에 있어 현재 사육곰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방식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

사육곰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사육곰 관리지침은 '수의사 또는 사육자가 승인내용에 따라 곰의 처리는 사육장안에서 하되, 외부에 노출되어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할 뿐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육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육곰의 도살 방식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사육곰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권고안에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도살 약물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절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의 도살방법에 위반된다.

C. 수의사법

대다수 사육곰 농가에서는 통상 농장주나 약재업자에 의해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Succinylcholine)을 주사하여 사육곰을 도살하고 있다. 사육곰은 가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가 진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의사법 위반이다.

○ 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음.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D. 약사법

웅담은 식약처 식품공전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구분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의약품(한약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등과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웅담을 불곰 또는 기타 근연동물의 담즙을 말린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 법 제52조(의약품등의 기준)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72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웅담 (熊膽) Ursi Fel

이 약은 불곰 *Ursus arctos* Linné 또는 기타 근연동물 (곰과 Ursidae)의 담즙을 말린 것이다.

- 성상: 이 약은 담즙으로 주머니 모양이고, 길이 9~15cm, 너비 7~9cm이다. 외투막은 어두운 갈색이고, 반투명하며, 주름져 있고, 섬유성의 질긴 막질이다. 외투막을 제거한 것은 황갈색~어두운 황갈색이고, 부서지기 쉽다. 부서진 면은 유리같은 광택이 있고, 습윤되어 있지 않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매우 쓰나 뒷맛은 약간 달다.

- 확인시험: 이 약의 가루 0.3g에 석유에테르 50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수욕에서 약 1시간 가온한 다음 여과한다. 잔류물 20mg에 염산 0.5mL, 아세트산(100) 2mL 및 클로로포름 2mL를 넣어 2분간 세게 흔들어서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에 황산 0.5mL를 가만히 넣을 때 접지면은 붉은색을 나타내고 이어 붉은색을 띤 갈색으로 되며, 상층의 액은 약간 붉은색을 띠나 그 액을 가만히 흔들어서 섞어 방치하면 액은 붉은색을 띤 갈색으로 되어 오래 지속된다.

- 저장법: 밀폐용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해 제조되어야 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1항

: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 제44조(의약품판매) 제1항 및 제2항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음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웅담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규격품 한약재는 한약사와 한의사만이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즉 의약품인 웅담을 사육곰 농장주가 사육곰을 도살, 웅담을 채취하여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존재한다.

E. 문화재 보호법

사육곰과 관련한 논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내에서도 천연기념물이자 종 복원의 대상으로 보호받는 반달가슴곰이 다른 한편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음에 더욱 가열된다. 천연기념물 동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동물로 문화적, 과학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1

: 동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나 번식지이어야 함

따라서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CITES에 의한 국제협약이나 야생생물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입하여 들여오더라도 이는 천연기념물 동물이 아니다. 외국에서 수입되어 한국 '특유의'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국가에만 살고 있는 포유류는 제주등줄쥐 단 1종에 그친다.¹⁾ 수입 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신청을 한 후,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만 수입동물이 천연기념물 동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달가슴곰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문화재대관에 의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학명 : *Ursus thibetanus ussuricus*로 아종이 천연기념물 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사육곰들이 반달가슴곰임에도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 아니라며 방치되는 이유이다.

환경부가 2012년 진행한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사육곰은 농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0여년 이상 인위적으로 사육된 개체로, 야종간 교잡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적혀 이들을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1) 국토환경정보센터 국토환경테마정보 한국고유종 <http://www.neins.go.kr/etr/ecology/doc01b.asp>

II 사육곰 현장조사

1. 조사 개요

국내 사육곰에 관한 조사는 2012년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이루어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가 유일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육 산업으로서 사육곰 산업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육곰의 복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우리는 사육곰의 열악한 복지가 다른 어떤 쟁점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동물 복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예상대로 사육곰 농장에서 사육곰의 복지는 농장주의 관심 밖에 있었다. 물, 먹이처럼 생존을 위한 기본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고, 야생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도 없었다. 곰 사육과 쓸개즙 채취를 합법화 해놓은 정부 또한 동물에게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무지하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대부분의 곰들은 방치와 학대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농장 중 26%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고 있었다. 31%만이 물을 상시 급여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먹이 뿐 아니라 음수도 제한하고 있었다. 34%의 농장에서 뜬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장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도살 경험이 있는 농장 중 83%에서 근이완제(석시닐콜린)를 도살용 약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근이완제가 질식사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을 아는 농장주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의사를 불러 도살하는 곳은 1개 농장 뿐이었다.

사육곰의 스트레스 지표로 정형행동을 비롯한 이상행동을 조사했다. 조사 농장의 83%에서 정형행동을 관찰했다. 정해진 동선을 맴도는 전형적인 정형행동이 많았고, 철창을 반복적으로 씹어 송곳니가 모두 닳은 개체도 있었다. 명확한 정형행동을 보임에도 농장주는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곳이 4개 농장이었다. 62.5%의 농장주는 곰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없다고 답했다.

대다수 농장주들은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사육곰 농장 산업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다. 설문에 응한 농장주의 86.2%는 정부의 매입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조사한 농장의 62%는 10두 이하를 기르는 소규모 농가였다. 소규모 농가가 많은 만큼 곰 사육에 생계를 의존하는 농가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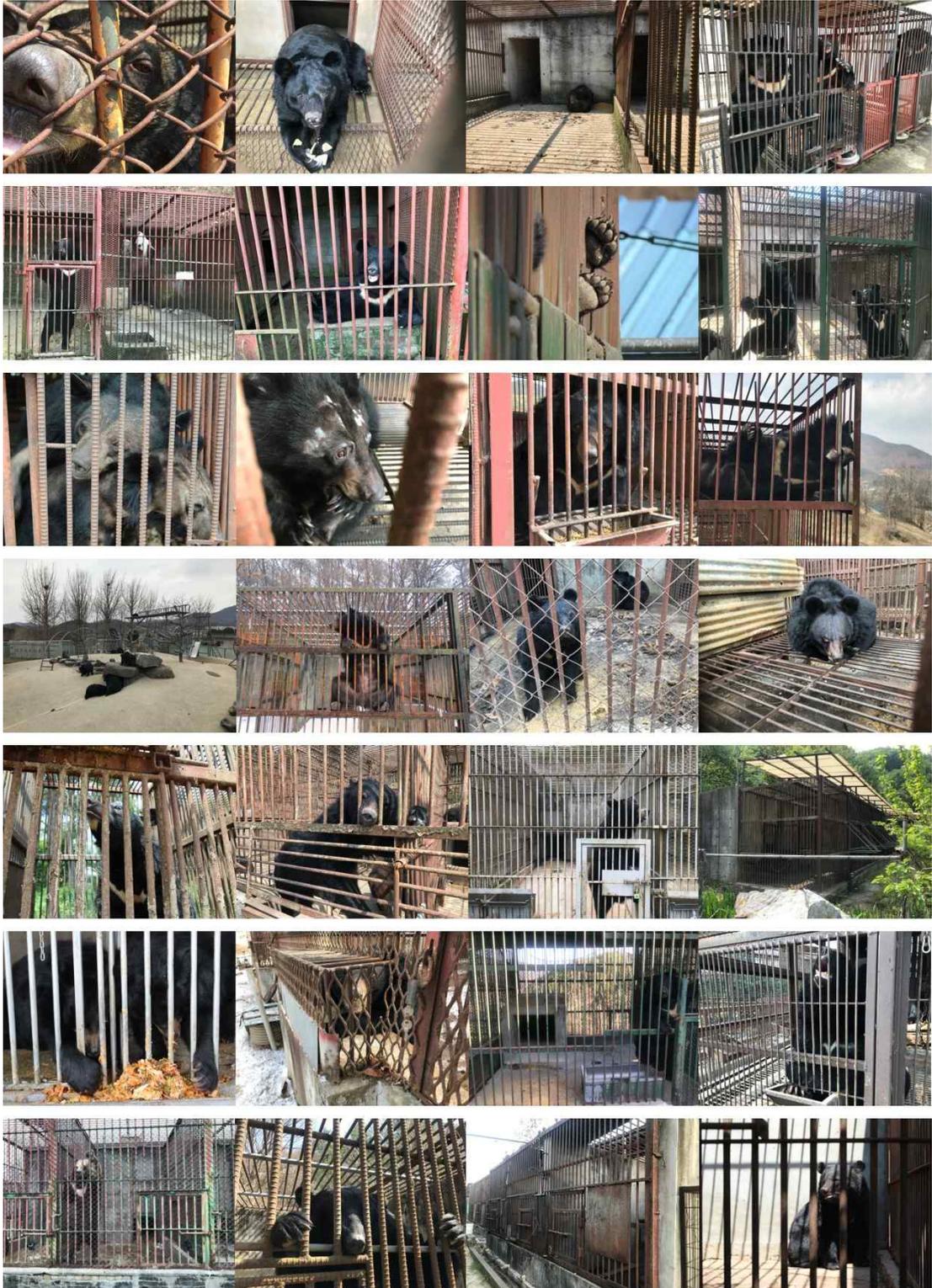
2. 조사 방법

A. 조사 기간 및 대상

(1) 조사 기간: 2019년 2월~6월

(2) 조사 대상: 전국 31개 농장 중 28개 농장 (농장별 질문항목 상이)

[사진 1] 방문농가 사진



B. 조사방법

사육곰협회에서 제공한 명단을 바탕으로 농장주에게 직접 연락 후 방문했다. 먹이 급여 시간 전에 방문하여 곰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며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이상행동 여부/유형 등을 관찰했고, 행동 분석을 위해 먹이 급여 시간 전/후의 행동을 각 1시간씩 녹화했다. 농장주와의 인터뷰는 평균 30분~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한 농장 당 평균 4시간 머무르며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다.

C. 조사 내용

동물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육 조건(표 1), 동물 정보(표 2)를 중점에 두었다. 추후 보호시설에 서의 곰의 합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곰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집단 수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곰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람의 관리에 적응할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설문(표 3)에서는 크게 곰 사육 양식, 곰 사육에 대한 농가의 인식과 현행 사육곰 관행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더불어, 산업 종식에 대비해 농가의 요구사항을 청문했다.

동물의 행동은 육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다. 그래서 동물복지를 평가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정형행동과 자해, 공격성, 사람에 대한 태도 등을 관찰했다. 사육되는 야생동물에서 스트레스의 지표로 사용되는 정형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을 목적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형행동 단독으로 동물복지의 지표를 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²⁾

(1) 사육환경

[표 2] 사육환경 조사표

Environmental Base	
한 마리당 면적	0. 4m ² 이하 1. 4~21m ² 2. 21m ² 이상
항상 물을 먹을 수 있는지	0. 없음 1. 있음
이중잠금장치	0. 없음 1. 있음
비 가림막	0. 없음 1. 있음
바람 가림막	0. 없음 1. 있음
바닥 재질	0. 뜬장 1. 시멘트 2. 흙
침상	0. 없음 1. 있음
운동장	0. 없음 1. 있음
놀이시설(구조물, 타이어, 밧줄 등)	0. 없음 1. 있음
숨을 장소(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0. 없음 1. 있음

2) Mason G.J. & Latham N.R. (2004) Can't stop, won't stop: is stereotypy a reliable animal welfare indicator? *Animal Welfare* 13: S57-69.

(2) 동물상태

[표 3] 동물상태 조사표

Animal Base						
BCS	1:	2:	3:	4:	5:	마리
피부질환	0 마리					
상처 (그 중 최근 상처)	마리 (마리)					
질병 (history+clinical sign)	마리					
Feeding time – 한 번에 최대한 많은 곰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1시간 고정관찰 (마리 중)						
비정상 반복 행동(이상행동)	마릿수		이상행동시간			
- 일정 동선으로 반복해서 걷기	마리					
- 반복해서 가로로 고개 젓기	마리					
- 반복해서 세로로 고개 젓기	마리					
-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	마리					
- 특정 장소 굽거나 파기	마리					
- 반복적 vocalising	마리					
- 반복적 핥기(자기 몸, 사물 등)	마리					
자해 여부 self-biting(흔적)	마리					
(사람이나 다른 곰) 위협	마리					
정서 상태 (흥분할 조건이 없을 때)						
0. 심각하게 불편함. 불안한 눈빛으로 털을 잔뜩 세우고 경계. 공격적 태도						
						마리
1. 두려움. 동공확장. 도망가고자 함. 귀 뒤로 젖히고 납작하게 엎드림.						
						마리
2. 약간 긴장. 가끔 두리번거림. 몸보다 머리가 위쪽으로 위치. 돌아다님.						
						마리
3. 완전히 편안함. 사지를 뻗고 드러누움. 눈을 감고 있거나 천천히 깜빡임.						
						마리

(3) 농장주 설문

[표 4] 농장주 설문조사표

Husbandry (설문)			
먹이 종류			
먹이 횟수			회/1일
배변청소 횟수			회/1일
- 행동풍부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 시도한 적이 있는지?			예 / 아니오
- 곰의 합사를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있다면 왜 합사를 시도하셨습니까?			
- 곰이 싸울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기타 설문			
- 곰을 기른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사육곰의 공격으로 다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있다면 얼마나 다치셨습니까?			
사육곰은 야생동물/농장동물 중 무엇으로 인식하십니까?			야생동물 / 농장동물
곰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언제 곰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밥 주기 전 곰이 정형행동(뱅뱅 도는 등 불안해보이는 행동)을 하는지?			
- 한다면 얼마동안 하는지?			예 / 아니오
현재 곰의 도축 방법은? (이전 방법도 모두)			
- 1년간 곰의 폐사율	총	마리 중	마리
- 병으로 죽은 곰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곰의 결핵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결핵이 사람과 곰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 아니오
- (농장주는) 결핵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곰의) 결핵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지방환경관에서 시설·동물 점검을 얼마마다 오나요?			
- 왔다면, 어떤 항목을 조사하고 갔나요?			
- 사육곰 관리카드와 실제내역이 일치하나요?			예 / 아니오
- 폐사·도축 신고시 지방환경관에서 직접 확인하나요?			예 / 아니오
- 곰을 분양하신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 어디로 하셨나요?			
- 생각하는 정부매입가의 적정 수준			원
정부에게 바라는 것			

3. 조사 결과

[표 5] 농장별 사육시설 조사표

농장	마릿수	사육시설							
		마리당 면적	바닥 재질	비 가림막	바람 가림막	침상	운동장	놀이 시설	숨을 장소
한강A	1	1	1	1	1	0	1	0	1
한강B	1	1	1	1	1	0	1	0	1
한강C	2	1	1	1	1	0	1	0	1
한강D	2	2	1	1	1	0	1	0	1
한강E	3	2	1	1	1	1	1	1	1
한강F	3	1	1	1	1	0	1	0	1
한강G	7	1	1	1	1	1	1	0	1
한강H	8	2	1	1	1	0	1	0	1
한강I	9	1	0	1	1	1	1	1	1
한강J	10	1	1	1	1	0.5	1	0	1
한강K	25	0	0	1	1	0	0	0	0
한강L	74(119)	0	0	0.5	0	0.5	0	0	0
원주A	1	2	1	1	1	1	1	0	1
원주B	2	1	1	1	1	0	1	0	1
원주C	5	1	1	1	1	1	1	0	1
원주D	19	1	1	1	1	0	1	0	1
원주E	21	0.5	1	1	1	1	1	0	1
원주F	27	1	0.5	1	0.5	0	0.5	0	0.5
영산강A	6	1	0	1	1	0	0	0	1
영산강B	28	1	0.5	1	0.5	0	0.5	0	0.5
대구A	3	1	0.5	1	1	0	0	0	1
대구B	4	1	0.5	1	1	0	0	0	1
대구C	12	1	0.5	1	0	0	0	0	0
금강A	1	2	1	1	1	1	1	0	1
금강B	2	1	1	1	1	0	0	0	1
금강C	2	0	1	1	1	0	1	0	0
금강D	44	1	1	1	1	0	1	0	1
금강E	182	0	0	1	0	0	0.5	0.5	0

* 마리당 면적: 4m2 미만 0점, 4~21m2 1점, 21m2 이상 2점

* 바닥 재질: 철창(뜬장) 0점, 시멘트 1점, 흙 2점

* 비가림막, 바람가림막, 침상, 운동장, 놀이시설, 숨을 장소: 없음 0점, 있음 1점

[표 6] 농장별 관리 및 사육곰 건강상태 조사표

농장	마릿수	관리		사육곰 건강 및 행동		
		상시급수 여부	일급여 횟수	평균 BCS	식전 정형행동	식후 정형행동
한강A	1	0	1	3	유	유
한강B	1	1	2	3	무	무
한강C	2	0	2	3	무	무
한강D	2	1	1	2.5	무	무
한강E	3	0	2	3	유	유
한강F	3	0	1	3	유	유
한강G	7	0	2	3.71	유	무
한강H	8	0	0.5	3.2	유	무
한강I	9	1	2	3	유	무
한강J	10	0	1	2.5	유	무
한강K	25	0	1	3.6	유	무
한강L	74(119)	0	0.5	2	관찰 불가	
원주A	1	1	1	3	무	무
원주B	2	0	1	2.5	유	유
원주C	5	0	1	2.2	유	유
원주D	19	0	1	4.1	유	무
원주E	21	1	2	3.14	유	유
원주F	27	0	1	2.62	유	유
영산강A	6	1	2	3.83	유	유
영산강B	28	0.5	1	3.56	유	무
대구A	3	1	1	3	유	유
대구B	4	1	2	3.5	유	유
대구C	12	0	2	3.08	유	유
금강A	1	1	1	3	무	무
금강B	2	0	1	3	관찰 불가	
금강C	2	0	1	3	유	유
금강D	44	0	1	3	관찰 불가	
금강E	182	0	0.5	2.5	유	유

* 상시급수여부: 부 0점, 여 1점

* 1일 먹이 급여횟수: 0회 0점, 1회 1점, 2회 2점

A. 동물복지

(1) 사육 시설

28개 농장 중 5개 농장이 뜬장(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하고 있었고 5개 농장은 일부 뜬장 사육, 일부 시멘트바닥 사육장에서 곰을 기르고 있었다. 나머지 19개 농장은 시멘트가 깔린 사육장이었다. 흙을 밟을 수 있는 사육장은 한 곳도 없었다. 농장 규모가 클수록 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청소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 년 동안 배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농장도 있었고,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뜬장에서 사육되는 곰은 시멘트 바닥에서 사는 곰보다 이상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사진 2] 오물이 잔뜩 묻은 뜬장



야생에서 반달가슴곰은 높은 나무에 올라 쉬거나 먹이활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 쉴 수 있도록 하는 장소는 동물원 등에서 사육되는 반달가슴곰에게 중요하다. 철골 구조물이나 시멘트 침상을 만들어 곰에게 오를 기회를 제공하는 농장은 28개 농장 중 6개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철창 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사진 3] 오물이 가득한 시멘트 바닥 사육장



종을 막론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이다. 그러나 사육곰의 급수 시설 상황은 심각하게 열악했다. 28개 농장 중 9군데 만이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급수기를 설치하거나 충분히 큰 물그릇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1일 1회정도로 제한되는 먹이급여 시간에 잠깐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물그릇과 밥그릇을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섞어주고 있었다. 대변과 소변이 물그릇에 들어있는 경우 그대로 물만 채워주는 농장도 있었다.

[사진 4] 평상시 비어있는 물그릇



겨울잠을 자는 곰의 특성 때문에 내실(굴)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실이 없는 경우 겨울잠을 자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중성화 사업 이전에는 번식의 필요가 있었고 겨울잠을 자야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내실을 갖춘 농장이 많았다. 그러나 28개 중 6개 농장의 곰들은 내실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사진 5] 내실이 없이 개방된 형태의 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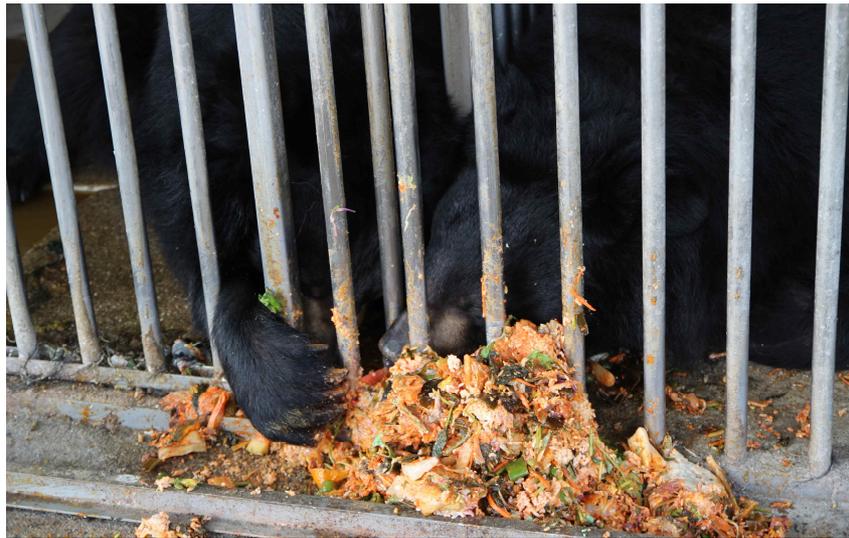


한 마리 당 면적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육장은 <사육곰 관리지침>의 기준인 4m²과 <멸종위기동물 사육시설 기준>인 21m² 사이의 넓이었다. 마리당 면적이 21m²을 초과하는 농장은 5개소였는데, 이는 모두 기존에 기르던 곰을 도살하고 남은 공간 여러 칸을 한 마리가 사용하는 경우였다.

(2) 영양

빵공장에서 나오는 재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급여하는 7 농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돼지사료나 개사료 등 배합사료를 급여한다(18농가). 소사료나 식육부산물도 급여하는 곳도 있었다. 배합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절감이다. 배합사료가 아닐 경우, 빵공장에서 나오는 재고물량은 설탕과 같은 단당류의 과다섭취와 무기질, 비타민 등 미량 필수영양소의 부족이 확실하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정확한 영양성분을 파악할 수 없으나, 대체로 염도가 높아 신장과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예상 가능하다. 음식물 찌꺼기는 부패하거나 곰팡이 등이 자랄 수 있어 비위생적이다.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 그나마 일정한 비용을 들여 기본적인 영양균형은 보장할 수 있다.

[사진 6] 음식물 찌꺼기를 다급히 먹는 곰들



그러나 먹이를 먹는 행위는 단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야생동물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그것이 명확해진다. 특히 반달가슴곰처럼 식물성 먹이를 섭취하는 동물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대부분을 먹이를 찾아먹는 일에 시간을 쓴다. 한국의 야생 반달가슴곰은 먹이의 90% 이상이 식물성 먹이이고 당도가 낮은 열매를 비롯해 어린 나뭇잎, 꽃, 곤충

등 다양한 먹이를 찾아 섭취한다.³⁾ 수를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질감과 냄새의 먹이를 찾아먹으면서 활발한 뇌 활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배합사료를 먹는 것은 이런 자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칼로리를 모두 섭취함으로써 '먹이 찾는 행동', '먹이 먹는 행동(껍질을 까거나 씹거나 발톱으로 부수는 등)에도 심각한 제약이 생긴다. 먹이를 찾는 행동을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은 탐색활동과 그를 위한 전신 운동을 제한하게 된다. 심각하게 운동량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BCS가 3.02라는 점은 곰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먹이가 충분히 제공되는 동물원이나 생추어리의 곰들은 과체중인 경우가 많다.

28개 농가의 1일 평균 먹이 급여 횟수는 1.27회였다. 3~4일에 한 번 먹이를 몰아주는 곳도 있었다. 먹이를 먹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횟수는 영양소의 충분여부와 무관하게 정신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다. 식사 시간은 너무 짧았고, 먹을 기회는 너무 적었다.

(3) 건강

모든 조사에 수의사가 동행했지만, 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조사 방법이 있었다. 보다 정확하게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취와 촉진,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이 필요했다.

외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곰의 육체적 건강상태는 BCS(신체충실지수), 피부와 피모, 부상 정도였다. 전체 농장 곰의 평균 BCS는 약 3.0으로 정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활동반경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소모가 없는 만큼 에너지 공급도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좁고 습한 곳에서 집단 사육되는 동물들만큼 곰팡이성 피부 감염으로 보이는 증상이 많이 보였다. 부상이나 상처를 입은 곰은 주로 귀나 발, 다리가 잘리는 양상이었다. 나이가 1년 미만일 때 다른 곰에게 공격받은 흔적이라고 농장주들은 설명했다.

3) 정대호 외. (2016)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의 배설물을 통한 먹이원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0(5): pp.865-873.

[그림 7] 곰팡이성 피부염으로 추정되는 증상



(4) 행동

모든 개체의 행동을 동시에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한 농장 당 1~3마리를 정해 정형 행동을 관찰했다. 정형행동을 관찰한 25개 농장 중 20개의 농장에서 먹이 급여 전 정형행동이 관찰됐다. 먹이 급여 후의 관찰에서는 12개의 농장에서 정형행동이 기록되었다. 5개의 농장에서는 조사자가 머무르는 약 4시간 동안 관찰 대상 동물 중에서 정형행동을 관찰할 수 없었는데, 이 중에는 정상행동을 보이는 개체도 있는 반면,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굴(den)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거나 침울(depression) 증상을 보이는 개체도 있었다.

농장에 따라 모든 개체가 정형행동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뜰장이거나 사육 면적이 작을수록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체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른 곰에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먹이의 양이 부족한 곳에서 더 심한 형태로 관찰되기도 했다. 정형행동을 보이지 않는 곳은 주로 조용한 곳에서 1~2마리의 곰을 기르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중 한 곳은 곰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고 공격 반응을 보이는 곳으로, 정형행동이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일 평균 먹이 급여횟수는 1.278회였는데, 정형행동은 먹이를 급여한 후보다 급여하기 전에 더 심하게 나타났다. 먹이를 섭취한 후(식후 1시간 후)에는 정형행동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먹이의 양이나 횟수가 부족한 경우 먹이에 더 집착을 보이게 되고, 먹이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정형행동으로 나타나곤 한다.⁴⁾

4) Vickery S. & Mason G. (2004) Stereotypic behavior in Asiatic Black and Malayan Sun Bears. *Zoo Biology* 23 pp. 409-430

정형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가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형행동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는 노력으로 보기도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 건강이 심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침울(depression)에 빠져 정형행동을 할 수도 없게 된다. 농장주들은 대부분 침울에 빠진 곰들을 보고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표현했다.

반복해서 자해를 하는 개체도 드물게 있었다.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이상행동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다른 개체보다 사람을 보고 적대감을 훨씬 심하게 드러내는 개체들이 있었다.

(5) 도살 (곰은 현행법상 가축이 아니므로 '도축' 대신 '도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곰에 대한 도살 방법은 동물원에서의 안락사 기준이 해외에서 적용되고 있을 뿐, 식용곰에 대한 적절한 도살 방법은 연구된 바 없다. 현재 광범위하게 쓰이는 도살방법은 '석시닐콜린'이라는 근이완제를 주사한 후 방혈하는 방법이다. 곰 도살 경험이 있는 18개 농장 중 15개 농장에서 석시닐콜린을 사용하고 있었다. 석시닐콜린은 사슴에서 뿔을 자를 때에 흔히 사용되지만 마취제가 아닌 근이완제이기 때문에 의식 소실 효과가 없고 진통효과도 없어 많은 국가에서는 위험약물로 분리되어 일반인의 사용 뿐 아니라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이고 식용동물에서만 빠른 체내 대사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곰에서 석시닐콜린의 대사속도는 연구된 바 없다. 곰에게 석시닐콜린을 주사하면 곰은 또렷한 의식을 유지한 채로 호흡근이 마비되어 질식사하거나, 의식이 있는 채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경동맥 등이 잘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명백한 수의사법, 약사법, 동물보호법 위반이지만 부실한 가축약품유통 규제는 야생동물인 곰에게서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었다.

9개 농장에서는 도살 경험이 없었다. 용량에 대한 수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험에 의존하고 있었고, 용량 부족으로 곰이 절명에 이르지 못하면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등 잔인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농장주들은 오랜 경험에 기반해 자신만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중에는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 가장 인도적이라고 답한 농장주도 있었다. 오직 1개 농장에서 축탁 수의사를 불러 정상적으로 마취를 하고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사육곰은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2조 1의 4에 따르면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곰을 도살할 수 있다. 그 처리 기준은 나이가 “10년” 이상 된 개체라는 것 한 가지 뿐이다. 이 한 가지 기준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이 되어 있다. 도살 의지가 있는 농장주가 곰을 도살하고 싶어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살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곰의 고통을 끝내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는 규제이다.

B. 농장주 설문 결과

[표 7] 농장주 설문조사 결과표

농장명	마릿수	먹이종류	행동풍부 화인지	사육 했수	야생 /농장	스트레스 유무	정형행동목적 /실제여부	도축방법	매입 의사
한강 A	1	돼지사료	부	30	농장	아니오	아니오/무	경험 없음	여
한강 B	1	개사료, 사과	부	29	야생	예	예/유	Sc	여
한강 C	2	개사료	부	20	야생	모름	아니오/무	경험 없음	여
한강 D	2	개사료	부	30	중간	예	아니오/무	Sc	여
한강 E	3	개사료, 사과	부	30	야생	아니오	모름	Sc	여
한강 F	3	개사료	부	35	중간	아니오	예/유	경험 없음	여
한강 G	7	개사료,잔반	부	30	중간	아니오	예/유	경험 없음	여
한강 H	8	음식찌꺼기(빵)	부	28	농장	아니오	아니오/유	Sc	여
한강 I	9	돼지/개사료	부	40	중간	아니오	아니오/유	경험 없음	부
한강 J	10	돼지사료	부	37	농장	예	예/유	Sc	여
한강 K	25	개사료/음식찌꺼기	부	36	야생	아니오	예/유	Sc	여
한강 L	74(119)							Sc	부
원주 A	1	돼지사료	부	23	야생	아니오	예/무	Sc	여
원주 B	2	소사료	부	27	중간	아니오	예/유	Sc	여
원주 C	5	개사료	부	15	모름	아니오	예/유	경험 없음	
원주 D	19	음식찌꺼기	부	37	야생	아니오	아니오/유	Sc	여
원주 E	21	개사료/과일 등	부	26	농장	아니오	예/유	목 매달기	여
원주 F	27	식육부산물	부	40	야생	예	예/유	Sc	여
영산강 A	6	개사료	부	19	야생	예	예/유	경험 없음	여
영산강 B	28	돼지/개사료	부	30	야생	예	예/유	Sc	여
대구 A	3	소사료	부	27	야생	아니오	아니오/유	Sc	여
대구 B	4	음식찌꺼기(빵)	부	10	야생	예	예/유	경험 없음	여
대구 C	12	돼지사료	부	25	농장	아니오	예/유	Sc	여
금강 A	1	개사료/식육부산물	부	19	농장	예	아니오/무	펜타닐 주사	여
금강 B	2	음식찌꺼기	여	13	농장	아니오	예/유	경험 없음	여
금강 C	2	개사료,돼지사료	부	20				축삭 수의사	여
금강 D	44								
금강 E	182	음식찌꺼기	부	30				Sc	여

* Sc: 석시닐콜린 주사

곰이 야생동물인지 농장동물인지를 묻은 질문에 답한 24명의 농장주 중 7명이 농장동물이라고 답했고 5명은 야생동물과 농장동물의 중간이라고 답했다. 곰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24명 중 15명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몇 시간의 조사 시간 안에도 명백하게 정형행동을 보이는 농장에서도 4명의 농장주는 그런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곰을 기른지 평균 27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농장주들의 답변이었다.

28명 중 25명의 사육주는 정부 매입 시 긍정적인 판매 의사를 밝혔다. 2명은 매입정책에 반대하여 계속 곰을 기르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2명은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보상 문제였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농장주가 대다수였으나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조심스럽게 밝히는 농장주들이 있었다. 몇 건의 실거래 응답 가격은 500만원이었다. 정부가 산업을 끝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은 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몇몇 농장주는 본인보다 곰에게 더 잘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곰 사육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응답채취목적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곰을 기른다고 답변한 농장주는 6명이었다.

4. 고찰

A. 복지 저해 요소

(1) 제도 미비

<사육곰 관리지침>의 곰 사육시설 권고기준에 따르면 사육사는 성수 1마리 당 4m²이상, 운동장은 성수 1마리당 10m²이상으로 정해져있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멸종위기동물 사육시설 설치기준(표 8)에는 반달가슴곰의 사육 기준을 “넓이 21m², 높이 2.5m,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으로 정해놓았다. 물론 면적은 국제적으로 더 이상 “중요한” 사육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충분한 면적은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동물의 신체적/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이다. 한 종의 동물에 두 가지의 면적 규정이 적용되는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몸만 겨우 돌릴 수 있는 <사육곰 관리지침>의 면적 기준조차 권고 사항에 그칠 뿐이다. 훨씬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아무 제제를 할 수 없다.

[표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곰과 발취)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시 증가 넓이
식 육 과 곰	말레이곰	- 넓이 10.5m ² , 높이 2.5m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 넓이 21m ² , 높이 2.5m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불곰	- 넓이 32m ²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사육곰은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2조 1의 4에 따르면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곰을 도살할 수 있다. 그 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나이가 “10년” 이상 된 개체라는 한 가지 기준 뿐이다. 이 한 가지 기준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이 되어 있다. 도살 의지가 있는 농장주가 곰을 도살하고 싶어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살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곰의 고통을 끝내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는 규제이다.

안락사는 동물복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자 해결책이다. 동물의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안락사를 해주는 것이 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윤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현행 <사육곰 관리 지침>에는 도살방법 뿐 아니라 안락사에 대한 명시도 없어서 농장주들은 법적 책임이 두려워 동물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동물의 고통을 알면서 그 고통을 지속시키는 것은 동물학대다.

(2) 동물에 대한 지식과 관심 부족

농장주들은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곰이라는 동물과 곰 사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보였다. 특히 동물복지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곰을 죽지 않게 기르는 수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스스로의 경험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농장주들은 오히려 조사자들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대에 오랫동안 동물을 기른 집단이기도 하고, 곰 사육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탓이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담당자들 또한 동물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 그도 그럴 것이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동물은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육곰들은 소위 ‘잡종’에 종성화가 되어 있고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그 아종과 무관하게 종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늪어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미비한 탓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동물보호법을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자세도 문제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시민단체 역시 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가두어 기르는 야생동물 복지는 국내 전문가가 매우 적다. 일부 단체는 십수년 동안 사육곰 문제를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동물복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질병 때문에 안락사가 필요한 개체의 안락사를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임시 보호 명목으로 지자체 기존/신규 관람시설에 곰을 보내는 사업도 동물복지 관점에서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B. 곰 행동 분석을 고려한 보호 시설 수용 가능 여부

(1) 곰 보호시설(생추어리) 환경 적응 가능성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생추어리에서 구조되는 곰이 생추어리의 관리 방식에 적응하는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먹이와 사람에 대한 태도다.

동남아시아의 사육곰 농가에서는 주로 쌀죽을 수어 급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지나친 탄수화물 의존성과 치아질환을 유발한다. 생추어리로 구조한 후에는 과일과 채소, 배합사료를 급여하는데, 그 적응 과정이 쉽지 않아 과일과 채소를 쌀죽에 섞어서 먹이는 기간이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육곰들은 배합사료에 익숙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조사자들이 시험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주었을 때 거부하는 곰이 없을 정도로 쉽게 받아들였다.

몇 개체를 제외하면 곰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 뿐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다소 불편해하거나 거리를 둘지라도, 낯선 조사자가 주는 먹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더 커서 쉽게 먹이를 받아먹었다. 농장주가 평소에 낙과라든지 남은 채소 등을 주는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동네 주민들이 왕래하는 공개적인 곳에 사육 시설이 있어서 낯선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합사 가능성

야생의 반달가슴곰은 주로 단독 생활을 하고 번식기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만 다른 곰을 만나 사 회적 관계를 맺는다. 육식동물처럼 강한 영역동물은 아니지만 수컷끼리는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이 분명한 종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동물원이나 생추어리 같은 제한된 사육공간에서는 동물복지를 고려했을 때 집단 사육을 하는 것이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⁵⁾ 사회적 상호 작용을

5) Lianne O. (2016) Factors affecting the quantity of social interactions and aggression in captive groupoused Asiatic black bears (*Ursus thibetanus*). *The Plymouth Student Scientist*, 9, (2), pp.29-48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자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의 곰 생추어리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합사 훈련이다. 동물행동전문가들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개체 간 합사 훈련을 시킨다. 이 과정은 24시간 내내 관리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매우 주의 깊은 관찰과 동물행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싸움이 크게 벌어지면 순식간에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싸움을 즉시 말릴 수 있는 매뉴얼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육곰들은 창살로 분리된 시설에서 단독 사육되고 있다. 옆 칸의 개체 간에는 꾸준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농장주의 허락을 받고 시험적으로 격벽을 분리했을 때 우려했던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십수년 동안 분리 사육되던 곰들은 이산 가족을 만난 것처럼 조심스럽게 장난을 치며 서로에 대한 흥미를 드러냈다. 이는 합사를 계획하는 데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한국에는 곰을 훈련시킬 수 있는 동물행동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Ⅲ 사육곰 관련 시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시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사육곰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사육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여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되었다.

사육곰 산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1%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사육곰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생츄어리 이주 운동에 85.6%가 찬성하였다. 또한 79.3%의 응답자가 문제 해결에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육곰 특별법 제정에 78.3%가 찬성하여, 사육곰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 A. 조사방법 : 전화조사 (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2019. 8. 1 - 8.5)
- B. 조사지역 : 전국(제주 포함)
- C.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1,500명(성별, 연령, 지역 인구 수에 따라 비례 배분)

[표 9] 표본구성표

성별	연령	지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경남	제주
남성	19-29세	18	29	3	10	9	29	4	27	8	1
	30-39세	18	28	2	9	7	24	4	24	7	1
	40-49세	18	33	3	11	10	30	5	28	9	1
	50-59세	18	31	3	11	10	32	6	30	9	1
	60세이상	22	31	4	13	13	36	7	41	10	1
여성	19-29세	18	26	2	8	8	25	3	24	6	1
	30-39세	18	27	2	8	7	23	4	23	7	1
	40-49세	19	32	3	10	9	31	4	28	9	1
	50-59세	18	31	3	10	10	33	5	32	9	1
	60세이상	27	37	5	16	17	45	10	51	12	2

D. 조사내용

(1) 조사주요내용

조사 문항은 사육곰 산업의 인지 여부 및 사육곰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문항

Q1)사육곰 산업은 1981년 정부 권장으로 시작되었으나, 곰의 수입과 수출이 금지된 현재에도 곰 농장에는 500여 마리의 곰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님께서도 국내에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사육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Q2)사육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3)최근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사육곰을 구조하여 보호소로 이주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4)사육곰 농가의 전업/폐업을 지원하고 사육곰 보호소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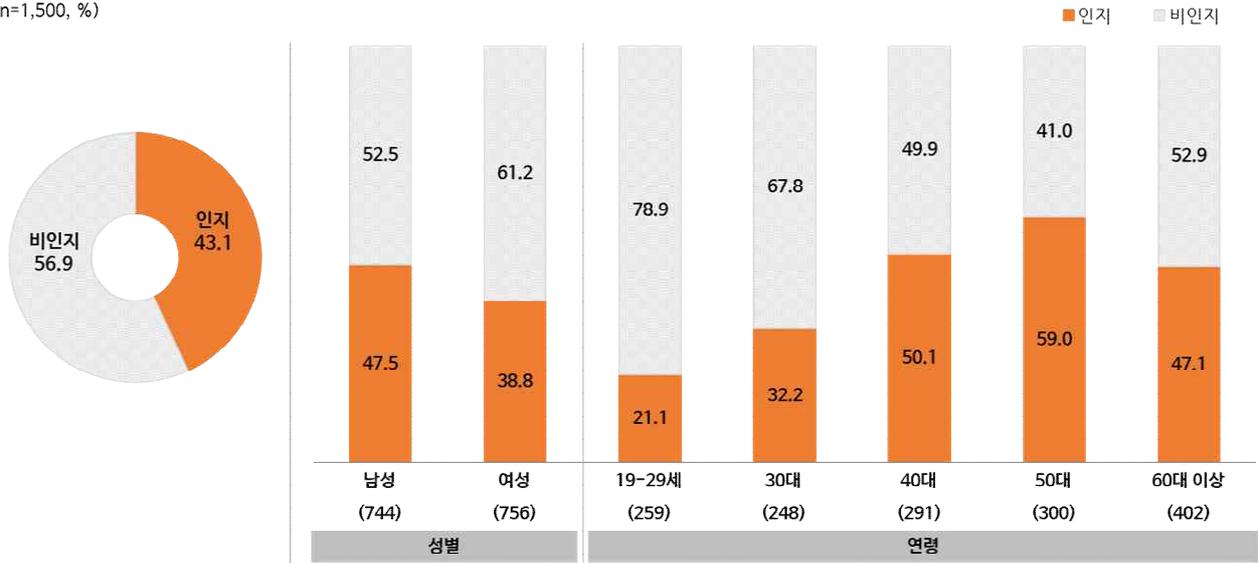
A. 사육곰 산업 인지 여부

국내에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사육곰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1%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인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9~29세 응답자의 21.1%만이 사육곰을 알고 있음에 비해, 40대는 50.1%, 50대는 59.0%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쓸개즙 채취 및 탈출 사고 등 사육곰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이슈 제기 및 언론보도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사육곰 문제 해결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웅담 자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사육곰 산업 인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성별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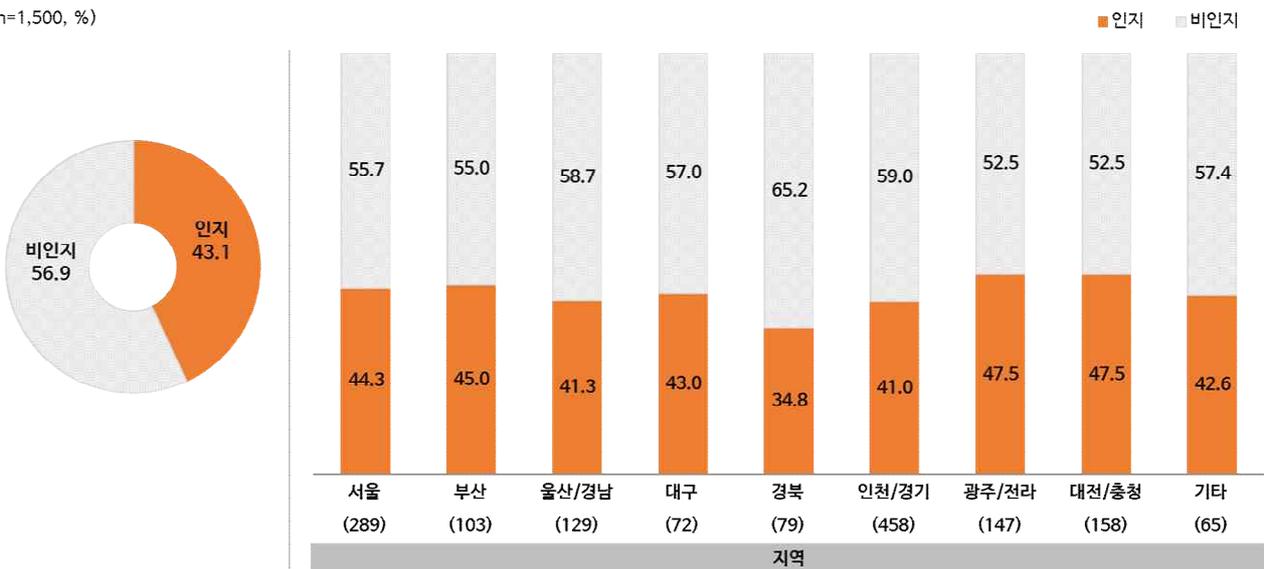
(n=1,500, %)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경북 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34.8%만이 사육곰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그림 3] 사육곰 산업 인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지역별)

(n=1,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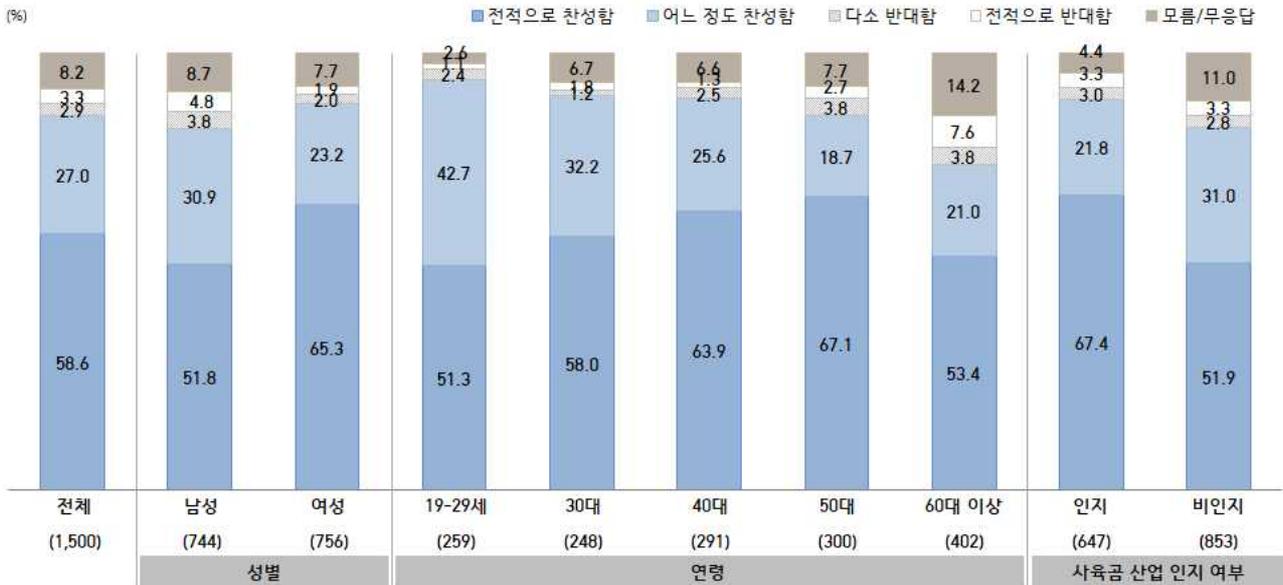


B. 사육곰 생츠퍼리 이주 운동 관련 인식

사육곰을 구조하여 보호시설로 이주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58.6%,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응답 27.0%로 열악한 사육환경에 놓인 사육곰의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육곰 문제를 알고 있던 응답자의 89.2%가 생츠퍼리 이주운동에 찬성하였으며, 사육곰 문제를 알지 못했던 응답자의 경우에도 82.9%의 응답자가 이를 찬성하여, 사육곰 문제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찬성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림 4] 사육곰 생츠퍼리 이주 시민운동에 대한 필요성 공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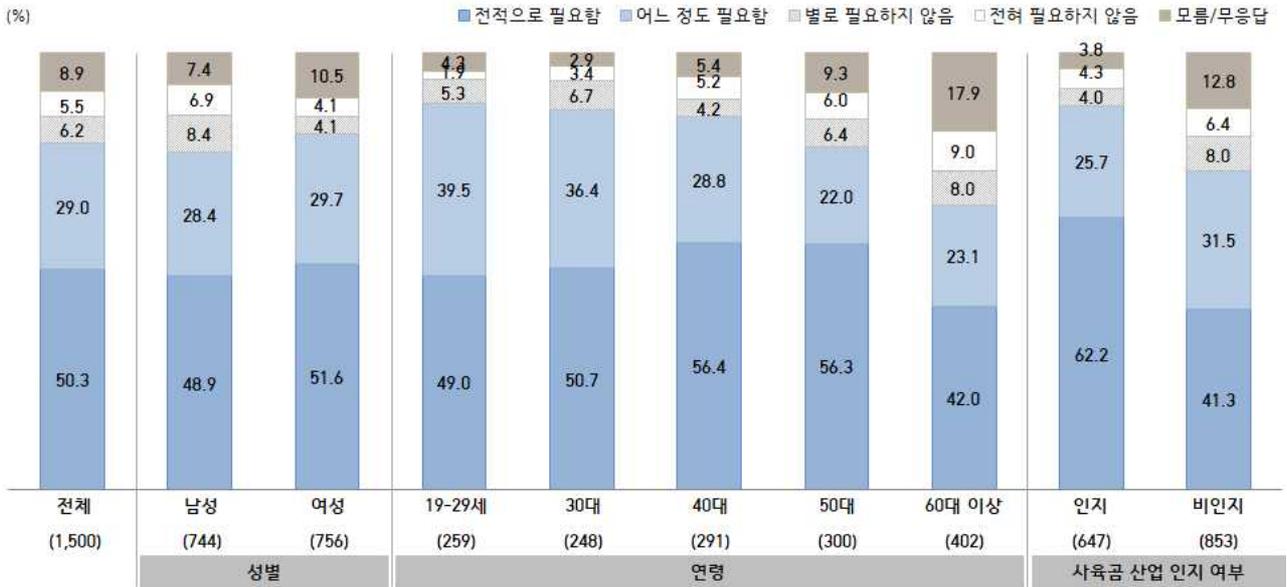
C. 사육곰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부 역할 인식

사육곰 문제 해결에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적으로 필요함' 50.3%, '어느 정도 필요함' 29.0%로 나타나 정부의 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책임을 묻는 시민의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 50대에서 각각 56.4%, 56.3%로 나타나, 사육곰 문제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이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는 더 이상 환경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사육곰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사육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책임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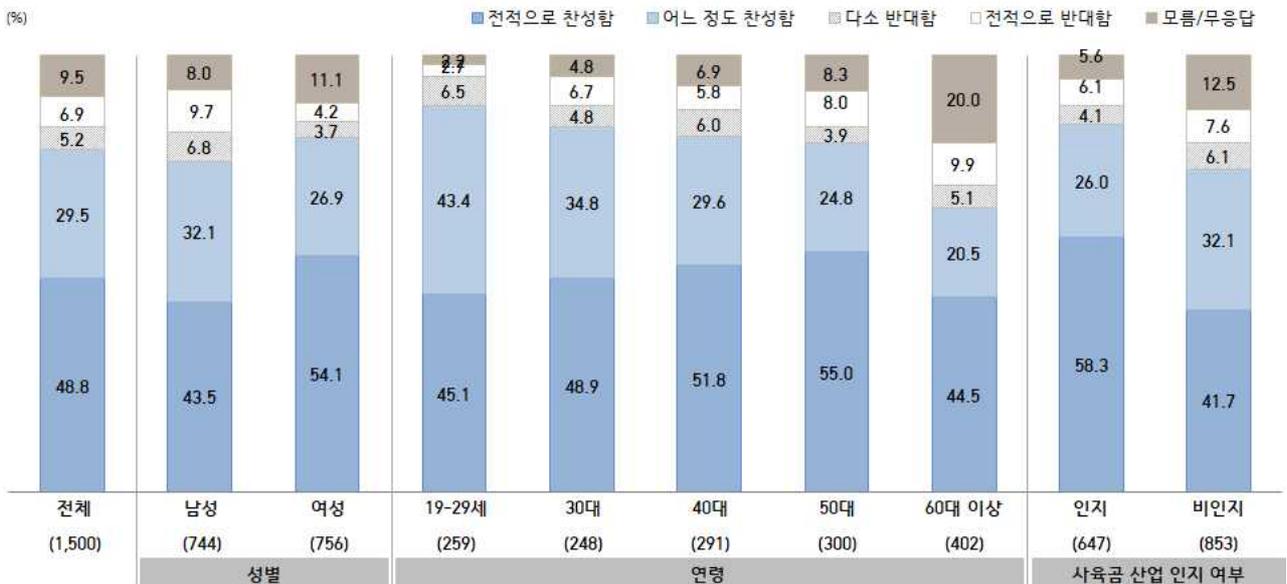
[그림 5] 사육곰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동의 여부



D. 사육곰 특별법 제정 관련 인식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육곰 문제 해결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78.3%가 이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오해가 없도록 질문 항목은 '사육곰 농가의 전업, 폐업을 지원하고 사육곰 보호소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48.8%의 시민이 전적으로 찬성, 29.5%가 어느 정도 찬성하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사육곰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동의 여부



4. 고찰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인식조사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통한 사육곰 문제 해결과 사육곰의 보호·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여론을 보여준다. 사육곰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의 필요성, 생츄어리 이주운동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해 모두 높은 지지 및 찬성을 보여, 시민들의 일관된 사육곰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사육곰 산업에 대한 반대 여론과 사육곰 산업 정책 폐지 및 정부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여론은 기존 사육곰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사육곰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2005년 녹색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한 '웅담 및 사육곰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조사'와 2007년 녹색연합이 단병호 의원실과 함께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진행한 '곰 사육실태 및 대책 관련 사육농가 설문조사'가 있다. 2005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87.1%는 웅담채취 목적의 곰 사육에 반대하였고, 한의사 93.1%는 웅담 처방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정부의 곰 사육 정책에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웅담의 효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농장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곰 사육농가의 90.1%가 현재 곰 사육은 수익성의 없고 72.1%가 앞으로도 전망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0.0%가 정부가 적정수준의 보상을 할 경우 곰 사육정책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또한 기존의 결과들과 궤를 같이 하며, 사육곰 산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사육곰 문제 해결에 있어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찬성 여론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역할 및 특별법 제정과 같이 '정부의 기능'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소극적인 답변 가능성이 높은 문항에 대해서도 입법·행정적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정부가 사육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시민사회의 해결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과거와 같은 임시적 조치가 아닌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IV 야생동물 이용 산업 해결 외국 사례

1. 외국 사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약재, 고기, 모피 등을 위해 길러왔다. 그러나 야생동물 보전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로 점차 야생동물의 경제적 이용은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다. 야생동물을 가축처럼 집약적으로 가두어 기르는 것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동물복지를 충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육곰 산업의 구체적 종식 절차를 꾸리기 위해 베트남에서의 쓸개즙 산업 금지와 노르웨이에서의 밍크·여우 모피농장 산업 폐쇄 사례를 살펴본다.

A. 베트남

1990년대부터 쓸개즙 수요증가로 베트남의 사육곰 농장은 급격히 늘어났다. 2005년, 베트남 정부는 쓸개즙 채취를 금지했으나 사육곰 농장은 그대로 둔 채 쓸개즙만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었다. 2006년 베트남의 사육곰 수는 4천 마리에 달했다.

2010년부터 주요 용담 구매자였던 중국인과 한국인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육하는 곰의 쓸개즙이 약효가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동물보호와 민간요법에 관한 사람들의 교육·인식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쓸개즙 가격이 떨어지자 굶어죽는 사육곰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2016년 Free the bears의 전국 사육곰 농장 설문조사 결과 66%의 농장주가 더 이상 쓸개즙 판매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최근 쓸개즙의 가격은 약 13% 하락했다.

국제적 여론 악화와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15년 사육곰의 수는 1,300마리 이하로 떨어졌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농장에 남은 모든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사진 8] 애니멀스 아시아와 프리 더 베어스의 곰 생츠퍼리 (베트남)



애니멀스 아시아(Animals Asia Foundation), 프리 더 베어스(Free the Bears)와 같은 동물보호단체는 베트남 정부와 협약을 맺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곰 보호시설(생츄어리)을 계속 늘리고 있다. 정부에서 사육곰 농장을 적발하고 곰을 압수하면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곰을 수용한다. 보호시설은 관람시설이 아니라 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생츄어리(Sanctuary) 형태다.

B.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한때 자국의 주요산업 중 하나였던 여우 및 밍크 모피 산업(Fur farming)의 종식을 준비 중이다. 산업의 전성기이던 1939년 당시에는 세계 최대 여우 모피 생산국으로 국내에 2만 개의 농가가 있었다. 하지만 동물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산업 규모는 점차 축소되었고, 2008년에는 밍크·여우 농장의 수는 505개 정도만이 남았으며, 세계 시장의 1% 정도를 점유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에는 밍크 모피는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1%, 여우 모피는 2~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사진 9] 밍크농장 사진



그 후 농가수가 급감하며 2018년 기준 167개 모피 농가만이 시장에 잔류하고 있으며, 모피농가 단체인 Norges Pelsdyrslag에 따르면 연간 매출은 3억 크로네(한화 396억여 원) 정도다. 이렇게 생산된 모피의 99%는 주로 아시아 국가로 수출된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내에서는 300개 이상의

유통업체가 이미 모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산업 사양화 길을 걷는 가운데 2018년 1월 노르웨이 정부는 여우, 밍크 농장에 대해 순차적 폐쇄를 담은 법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듬해인 2019년 6월 노르웨이 의회는 모피산업을 종식하는 법안(Fur Farming Prohibition Act)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 따라 2025년 2월 이후에는 "판매 또는 다른 모피 사용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며, 순차적으로 밍크·여우 농가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농림부는 5억5백만 크로네(한화 약 670억 원, 농장철거를 위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중 1억 크로네를 농민들이 다른 수입원을 찾도록 지원하도록 배정)의 전폐업 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2. 시사점

앞의 베트남과 노르웨이 사례를 보았을 때 야생동물을 이용하는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규제를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야생동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당 목적으로 동물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베트남의 사례로 2005년 웅담 채취 자체는 금지했지만 곰의 사육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후자에 속하며, 올해 통과된 법에 2025년 이후 판매 또는 다른 모피 사용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베트남의 경우 웅담 채취를 금지했으므로 산업 자체가 이미 종식되었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1,000여 마리의 사육곰들이 존재한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웅담의 불법 채취가 확인되면 곰을 몰수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생츄어리 등으로 보내고 있다. 정부는 농장의 곰들을 2025년까지 생츄어리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노르웨이는 계획대로라면 2025년 이후에는 모피 생산을 위해 동물을 소유할 수조차 없고, 정부는 남은 기간 전폐업 지원금에는 농장 자체를 철거하는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이 공급자를 시장에 남겨 놓은 채 웅담채취만을 금지해 음성적으로 잔존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는 점과 대비가 되는 대목이다. 만약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농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두 사례와는 다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사육곰 산업은 종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014-2017년 진행된 증식금지 사업을 통해 웅담채취 목적의 사육곰은 전시용으로 전환되거나 증성화가 완료된 상태다. 자체증식이 막히고 추가적인 사육곰의 유입이 막혔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사육곰들이 도태된다면 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

점을 특정할 수 없으며, 5년 미만의 개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개체 중 일부는 길게는 30년 이상을 지금과 같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사육곰 산업 종식의 목표와 방향에는 현재 남아 있는 곰들의 복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베트남 사례는 종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부터 이탈된 곰들의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A. 사육곰 복지 개선의 필요성

사육곰 현장조사 결과는 현재 사육곰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소한의 복지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가 전무하여, 현재의 사육환경은 사육곰의 기초적인 신체적, 정신적 요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물학대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농가의 규모가 클수록 사육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조사 대상의 83%의 농장의 곰들에게서 정형행동이 관찰되었고 자해행동을 보이는 개체까지 확인되었다.

동물에 대한 농장주들의 낮은 이해 또한 사육곰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절에 오랫동안 사육곰을 사육하면서 축적된 경험은 오히려 동물복지에 해악적이다. 사육과 도살방법 등에 교육을 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신적 상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현 상태에서라도 홍보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안락사는 동물복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자 해결책이다. 동물의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안락사를 해주는 것이 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윤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육곰의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노력 부족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다. 사육곰의 복지 문제가 심각함에도 사육곰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이를 고려한 문제 해결 접근은 부재하다. 2005년 만들어진 '사육곰 관리지침'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곰 사육과 관련한 유일한 정부 방침일뿐더러 이 지침 또한 면적 권고에 그치고,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육곰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오랜 기간 그 복지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사육곰 문제 해결은 사육곰의 복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B.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재확인

사육곰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일관적이다. 정부가 곰 사육 정책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사육곰 산업을 종식, 남은 사육곰 개체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지라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난 39년동안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2014년의 증식금지 사업이 전부이다.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핑계로 사육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미루고 있으나, 이번 사육곰 인식 조사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통한 사육곰 문제 해결과 사육곰의 보호·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일관된 지지 여론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함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사육곰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의 필요성, 생츠퍼리 이주운동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 및 찬성 경향은 사전 사육곰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나, 사육곰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던 시민이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운동과는 달리, 정부의 역할 및 특별법 제정과 같이 '국가차원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소극적인 답변 가능성이 높은 문항에 대해서도 입법·행정적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사육곰 문제의 해결을 민간과 시민 사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농장주 또한 더 이상 곰 사육을 계속할 의지가 없으며, 29명 중 25명의 농장주가 정부 매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또한 사육곰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농장주는 더 이상 사육곰 산업에 종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지난 증식금지 사업이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여론에 따른 것이듯, 이제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때이다.

2. 제언 : 한국의 곰 생츠퍼리 설립 및 운영

A. 적합 모델

국내 사육곰 산업 아래 응답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한 사육곰의 복지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 현재 사육곰들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 상태는 사육환경의 일부 개선과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로 해결 될 수 없다. 사육곰 산업의 종식과 현재와 같은 사육이 아닌 곰의 복지가 보장되는 환경으로의 이주가 필요한 이유이다.

생츠퍼리(Sanctuary)는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개념이나, 이미 해외에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일반화된 시설이다.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생츠퍼리는 동물의 복지와 안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동물이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하는 시설이다. 생츠퍼리는 동물보호와 생명 윤리 차원에서 최상의 방안이자, 국가의 동물보호 정책과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다.

479마리('19년 6월 기준)의 사육곰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사육곰을 순차적으로 매입·구조하여 생츠퍼리를 확장하며, 수용하는 방안

은 실현 가능한 윤리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이다. 물론 이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움직여야 가능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바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의 생츠퍼리를 직접 답사하여,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생츠퍼리 모델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삭감한 '물수동물보호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 규모로 '사육곰 생츠퍼리'에 필요한 최초의 형태를 충분히 갖출 수 있다. 한국의 곰 생츠퍼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1) 생츠퍼리 개요

- a. 장소: 미정 (청주, 서천, 김천 등 후보지 존재)
- b. 부지규모: 30,000평 (150마리 기준)
- c. 필요시설 : 보호시설(내실, 외실) / 부대시설(동물병원, 격리수용시설, 사무실, 교육실, 직원 숙소, 소독실, 관리실)

※ 시설세부 [별첨] **생츠퍼리 시설 세부 참고**

(2) 시설 마련 및 운영방식

해외 생츠퍼리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479마리의 사육곰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0만평 (33헥타르) 규모의 생츠퍼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육곰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1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3만평(10헥타르) 규모의 시설을 목표로 필수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완공하여 5~10마리씩 이주시키는 것이 사육곰의 복지를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건물의 배치나 구조, 방사장의 형태는 부지가 확정되어야 설계 가능하나, 초기 필수적인 시설은 곰이 머무르는 공간인 곰집(내실과 방사장을 모두 포함)과 관리실, 격리실, 사무실, 소독·환복실, 창고 정도이다. 한 개의 곰집에 최대 40마리의 곰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6개월에서 1년의 운영기간동안 하나의 곰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가로 곰집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미 존재하는 동물원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장점이 많다. 기존의 관리체계에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동물원 입장에서도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 필요 예산

사육곰 생츄어리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건립비와 이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구성되며, 초기 건립비는 73.5억원, 향후 23년간(사육곰 잔여 기대수명 반영) 인건비 및 운영비는 25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돼, 전체 예산은 총 328억원, 연평균 예산은 14억여 원 정도이다.

a. 건립비

구 분		비 용 (천원)
건립	부지	1,000,000
	설계 및 인허가	50,000
	시공	3,000,000
	부대시설	500,000
	추가시설비(1~4년차)	2,800,000
	합계	7,350,000

b. 인건비 및 운영비

년차	개체수	사육사	훈련사	교육인력	행정인력	수의사	총인원	인건비(천원)	관리비(천원)
1	40	5	1	1	1	2	10	320,000	240,000
2	60	8	2	1	2	2	15	470,000	260,000
3	100	13	3	1	4	2	23	710,000	300,000
4	150	19	4	1	4	2	30	920,000	350,000
5	149	19	4	1	4	2	30	920,000	349,000
6	149	19	4	1	4	2	30	920,000	349,000
7	149	19	4	1	4	2	30	920,000	349,000
8	148	19	4	1	4	2	30	920,000	348,000
9	148	19	4	1	4	2	30	920,000	348,000
10	147	19	4	1	4	2	30	920,000	347,000
11	146	19	4	1	4	2	30	920,000	346,000
12	145	19	4	1	4	2	30	920,000	345,000
13	144	18	4	1	4	2	29	890,000	344,000
14	142	18	4	1	4	2	29	890,000	342,000
15	139	18	4	1	4	2	29	890,000	339,000
16	135	17	4	1	4	2	28	860,000	335,000
17	130	17	4	1	4	2	28	860,000	330,000
18	123	16	4	1	4	2	27	830,000	323,000
19	114	15	4	1	4	2	26	800,000	314,000
20	103	13	3	1	4	2	23	710,000	303,000
21	87	11	3	1	4	2	21	650,000	287,000
22	66	9	2	1	4	2	18	560,000	266,000
23	37	5	2	1	2	2	12	380,000	237,000
총계								18,100,000	7,351,000

* 사육사는 사육곰 8마리당 1명, 훈련사는 40마리당 1명 배치

* 급여 1인당 3천만원(수의사는 4천만원) 일괄계산, 현재가치로 추정

(4) 시설 세부 및 운영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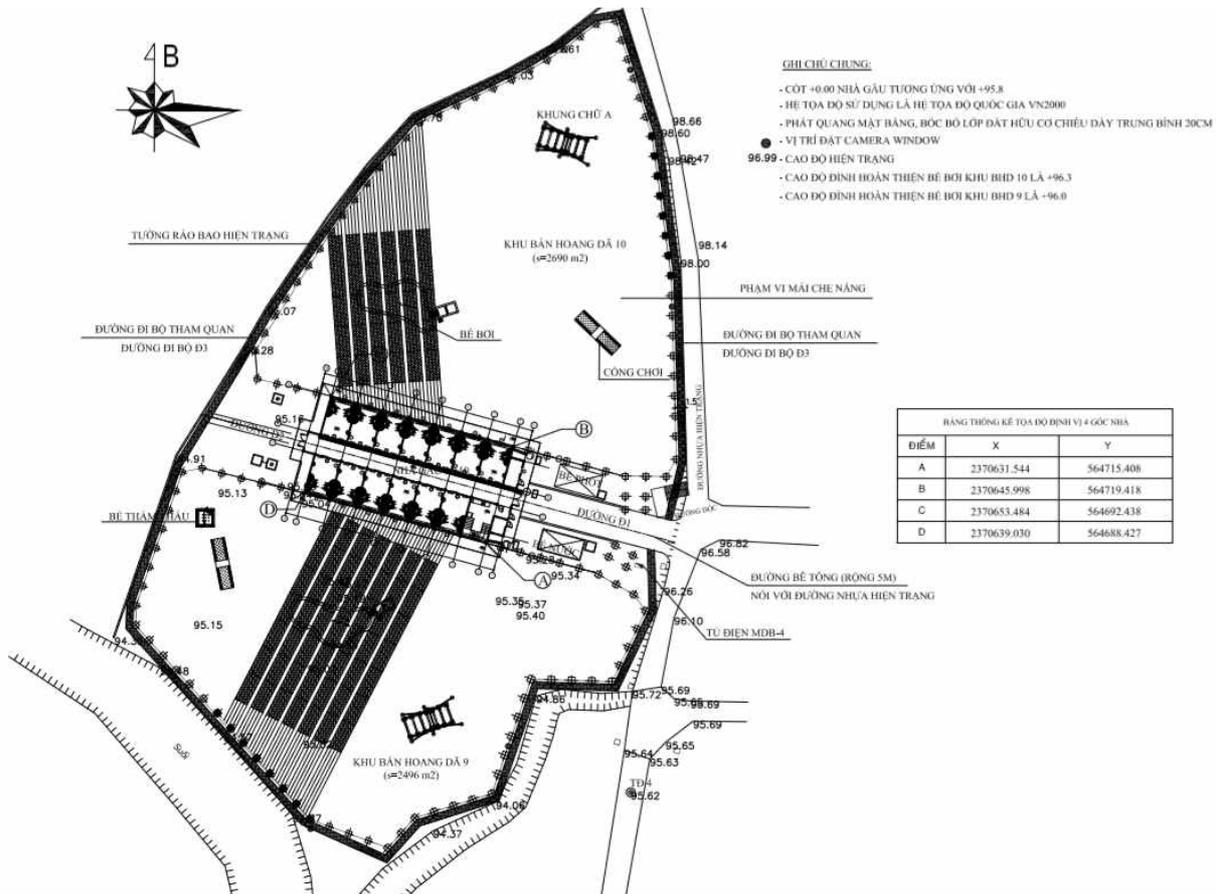
생츠퍼리 시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물복지다. 복지 관점에서 시설과 관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공간

해외 생츠퍼리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한 마리당 100m² 이상의 공간과 7마리당 1명의 사육사 배정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기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동물병원,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계류시설,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도 필요하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외 사례의 참조가 필요하다.

그림 7은 애니멀스 아시아(AAF)의 베트남 생츠퍼리에서 2017년 완공한 보호시설의 설계도이다. 방사장과 내실을 포함하여 한 단위를 이루는 구역이라고 볼 수 있다. 최대한 많은 곰을 수용할 경우 40여마리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0~30마리가 수용되어 있다. 가운데 관리자용 통로를 둔 형태의 내실을 중심으로 방사장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방사장 하나의 넓이는 부지 형편에 따라 2000~3000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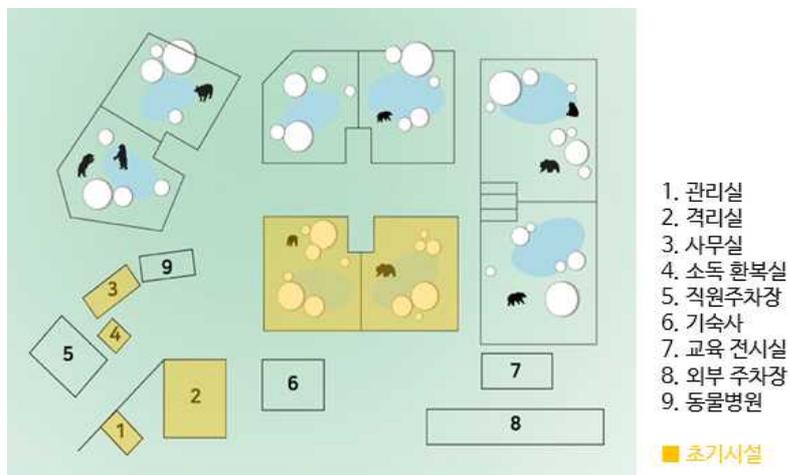
[그림 7] Animals Asia Foundation의 베트남 생츠퍼리 설계도



현재 베트남에 새로이 완공되어 구조를 시작한 국제동물보호단체 Four Paws에서도 AAF의 시설 구조를 많은 부분 차용했다. 이는 논의를 선도하는 AAF가 다른 단체들에게 최선의 설계와 운영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AAF의 협조를 받아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물론 기후와 부지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응용이 필요하다.

한국에 만들 곰 생츠퍼리의 설계는 부지 지형과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구성을 제안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 설계 가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국내 사육곰 생츠퍼리 설계 가안



b. 관리

곰과 같은 야생동물에게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뿐 아니라 야생에서의 행동과 욕구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야생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의 시선과 손길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사육곰들은 5~30년 동안 좁은 공간에서 단독 사육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필요한 운동욕구나 곰끼리의 소통 능력이 억눌려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아시아흑곰은 단독 생활 동물이지만 사육 상태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에 군집생활이 바람직하다. 이 점을 감안하면 곰끼리의 의사표현 기술을 익히고 운동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위적 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육곰 농장에서는 많게는 하루에 2회, 적게는 2~3일에 1회의 급여를 하고 있다. 주로 돼지사료, 개사료에 음식찌꺼기가 추가되는 형태이다. 곰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굶다가 갑자기 하루에 필요한 모든 열량을 한 번에 섭취하는 식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야생에서 하루 18시간 이상을 먹이 찾는 데에 쏟는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먹이는 씹고 뜯는 행위를 제한한다. 그 결과로 다수의 사육곰들은 치아, 혈당 조절, 소화 능력에 문제

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고 이는 곧 정신 질환과 연결된다. 생츠퍼리에서는 먹이 활동 시간과 방법, 먹이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다. 이 역시 적응하는 데에 한 달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

c. 인력

초기 40마리 운영을 기준으로 최소 사육팀 1명, 훈련팀 1명, 수의팀 1명, 교육·홍보팀 1명, 시설·행정팀 2명 등 총 10명 인원이 필요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인원	세부조건
사육팀	5명	야생동물 사육 경험이 있는 동물원 사육사 5명 (최소 40마리 입소 기준)
훈련팀	1명	동물원 동물 훈련 경험이 있는 훈련사 추후 동물 훈련에 대해 경험을 가진 훈련사 1명 추가 사육사 전원에게 훈련에 대해 지도
수의팀	1명	동물원 수의사 경험이 있는 수의사 1명
교육·홍보팀	1명	야생동물, 동물복지 교육·홍보 담당 1명
시설·행정팀	2명	NGO등의 조직 경험이 있는 행정 담당 1명 시설관리 담당 1명
합계	10명	초기 (40마리) 최소 운영 기준

정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성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제한적으로 관람객에게 시설 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농장에서 사육곰들 다수가 인간의 출현에 익숙하고, 생츠퍼리에서도 사육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곰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람 개방도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동물원처럼 관람객 교육 없이 무분별하게 소음과 접촉에 노출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물복지에 해가 된다. 따라서 관람이 이루어진다면, 관람에 선행되어야 할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마련과 진행에 필요한 인력까지 계산·확보해야 한다.

[별첨] 생츄어리 시설 세부

1) 곰집 (방사장, 내실을 모두 의미)

곰집은 한 동의 내실 건물과 건물 양쪽으로 붙은 두 개의 방사장을 말한다. 한 개의 곰집에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내실이 나란히 있고, 그 바깥쪽에는 각각 방사장이 딸려있다. 건축 시 최대한 자연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유리, 철조물 등 인공물을 건축 재료에서 배제한다.

방사장

- 20두 규모 2개(내실건물 하나를 두고 양쪽)로 시작
- 하나 당 50m*50m (756평)
- 펜스: 기초(50+40cm), 높이(250cm) 전기 펜스 7줄
- 바닥: 흙바닥+자생식물
- 문: 내실(곰용) 5개
 - 내실(사람용) 1개
 - 바깥출입용 2개(이중문. 밥주는 용도, 곰 출입용)
- 수영장 : 완만한 물 깊이 변화
- 놀이시설: 그네, 해먹, 구름다리 등 다양한 형태 높은 곳 먹이 공급용
- 수도: 수영장 옆 식수 공급용, 소화전 크기(물대포 필요)
- 사방 둘레에 1차로 콘크리트 차도(2.5m). 모서리는 큰 차 돌기 쉽도록 둥글게.



내실

- 각 방: 가로 4m, 세로 6m, 높이 3.5m
- 문: 바깥쪽 앞뒤로 하나씩 두 개(이중문)
 - 방사장 방향(중간 통로를 길게 해서 통로에 가둘 수 있게)
 - 문틈에 깔짚 안끼게

- 창문: 겨울에 창 닫을 수 있게. 곰에 닿지 않게. 창살 필요. 물 뿌릴 수 있게
- 침상: 가급적 해먹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사용기간을 고려할 때 철제 침상도 가능.
지상 1m이상 높이에서 여러 개 중 선택 가능하도록
- 밥통: 물청소 가능. 싸움 예방할 수 있도록 서로 떨어뜨림
- 물통: 콘크리트 물통. 수위자동조절 장치가 불가능하면 돼지급수기 사용
- 2층: 철망으로 되어 사람이 위에 올라가 관찰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

2) 동물병원

- 이동장 기본 2개 필요
- 이동장 부착식 저울
- 기본검사처치실
- 약제실
- 수술실
- 방사선실
- 병리실
- 부검실
- 회복실

2) 격리실

- 구조된 곰들이 방사 전, 한 달 가량 머무는 공간
- 1마리 씩 들어가는 뜬장 케이지 10개 필요
- 질병 확인, 먹이 훈련, 친화 훈련 등이 이루어짐
- 최초 전기펜스 훈련용 간이방사장 필요

3) 소독·환복실

- 외부 전염병 유입 및 인수공통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시설
- 직원들 출퇴근 시 환복 공간
- 관람객 출입구

4) 교육·전시실

- 교육시설, 박물관, 강의실 겸 회의실, 기념품샵 등

5) 창고

- 깔짚 창고 : 가을에 깔짚을 모아 보관,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가능해야 함
- 먹이 창고(저온창고) : 대형 냉장고
- 부자재 창고

